산업용 기자재
적합성평가 면제

FA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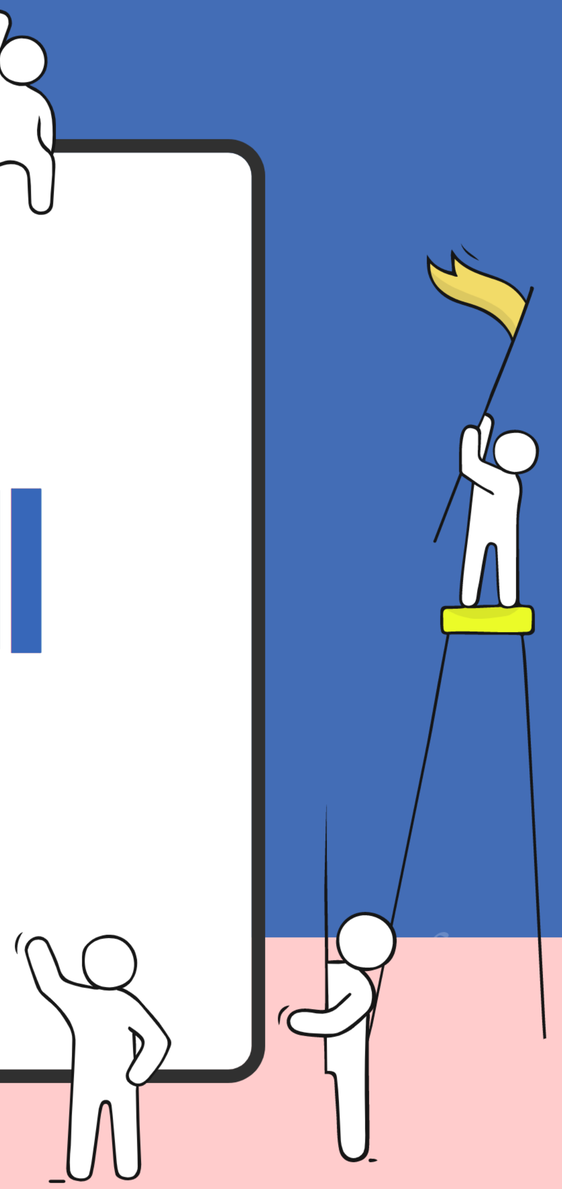

'23.2.3. 고시에 따라

산업용 기자재의 적합성평가가 면제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8조(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

1.~4. (현행과 같음)

5. 산업용 기자재(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며,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등록 기자재 또는 적합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는 무선 기자재에 한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가.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은 입출입 기록관리가 가능하며, 허락된 인원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공간일 것

나. 유통기록 관리는 면제 받은 기자재의 면제승인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수입현황, 판매·납품 현황 등의 기록과 증빙자료가 면제 받은 이후에도 추적 가능할 것

Q1

산업용기자재를 수입할 때, 면제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A) 면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② 통관단일창구 ▶ ③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 작성 (공통사항, 품목사항, 첨부파일) ▶ ④국립전파연구원 승인 ▶ ⑤산업용 기자재 통관
(1일 소요, 주말 ·공휴일 제외)

산업용 기자재를 수입할 때 면제신청 시 첨부파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

1.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유서 , 납품계약서 등 납품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2.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

※ 산업용 기자재를 수입하여 직접 설치·운용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및 화물송장(인보이스) 제출

Q2

산업용 기자재를 국내 제조 및 설치할 경우 면제절차를 알려주세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 ▶ ②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신청 ▶
③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 작성 ▶ ④ 사유서를 첨부하여 면제 신청 ▶ ⑤ 국립전파연구원 승인
(1일 소요, 주말 ·공휴일 제외)

Q3

산업용 기자재를 국내 제조하여 판매할 경우 면제절차를 알려주세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 ▶ ②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신청 ▶
③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 작성 ▶ ④ 사유서 및 납품계약서 등 납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면제 신청 ▶ ⑤ 국립전파연구원 승인 (1일 소요, 주말 ·공휴일 제외)

Q4

면제 신청 사유서 양식은 어디에서 받아야 합니까?

A) 국립전파연구원 누리집에서 내려받기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 누리집
(www.rra.go.kr)

▼

요건면제안내 클릭

▼

면제항목별 사유서 양식
내려받기

▼

5. 산업용 기자재 사유서

<국립전파연구원 누리집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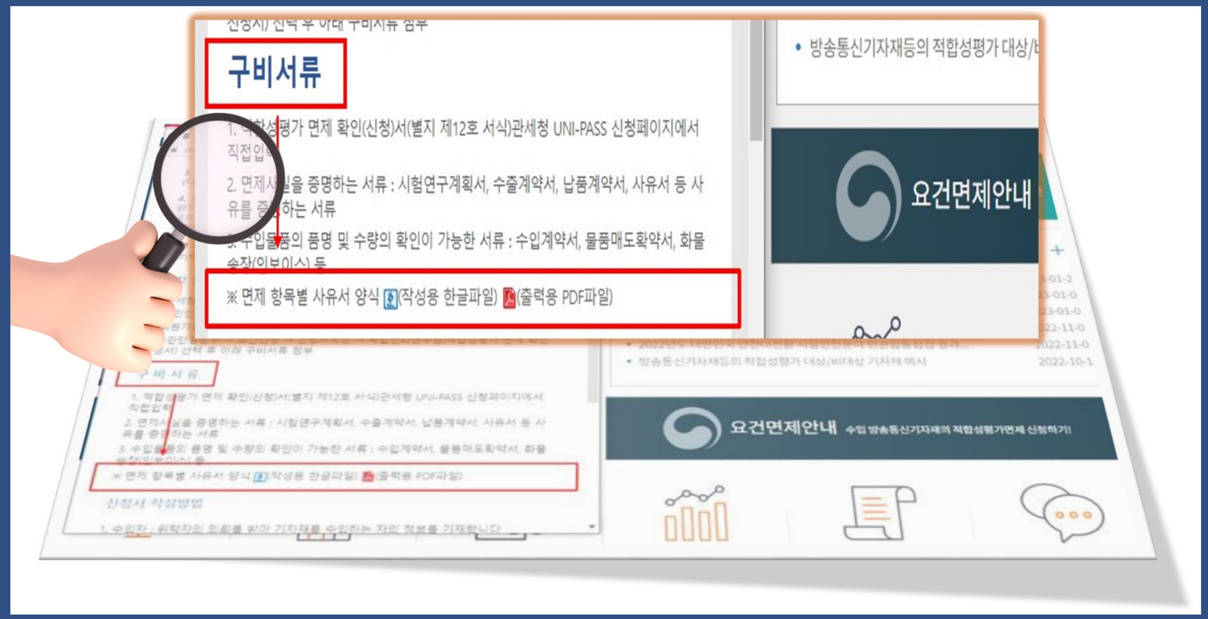

Q5

산업용 기자재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납품업체(제조 또는 생산공장)와 납품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 산업용 기자재로 면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A) 면제 신청시에는 납품계약서 등 납품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할 당시에 납품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통해 납품업체(제조 또는 생산공장)에 납품되는 것임이 확인 가능하여야 산업용 기자재로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품계약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면제 기자재를 납품하게 되면
해당 수량에 대해서 다시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를 통해 면제 신청

Q6

제조 또는 생산공장(반도체 공장,자동차 공장 등)에 설치된 산업용 기자재의 유지·보수 용도로 기자재의 구성품(또는 부품)을 납품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면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A) 제조 또는 생산공장에 설치된 산업용 기자재의 유지·보수 용도로 기자재의 구성품(혹은 부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Q7의 답변을 참고)를 첨부·제출하여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자재의 구성품(혹은 부품)이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면제 신청없이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이 가능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구성품(또는 부품)의 예

- 퓨즈, 케이블, 소켓 등 전자파 발생 및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부품
-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유체펌프, 팬, 전격살충기, 공기청정기
- 범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특수설비에 내장되어 사용되는 전원공급장치
- 보드류(다만, 컴퓨터 내장 구성품류인 보드류는 대상) 등

Q7

Q6)의 답변에서 산업용 기자재의 유지·보수 용도로 납품하는 기자재의 구성품(혹은 부품) 면제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관련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아래 ①, ②의 서류를 모두 첨부·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산업용 기자재의 구성품(또는 부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시> 기자재의 제품 설명서, 부품배치도 등 기자재의 구성품(또는 부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최종 납품업체가 산업용 기자재의 구성품(또는 부품)임을 확인한 서류 등)

② 최종 납품업체와 거래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시> 최종 납품업체가 협력업체로 지정한 서류, 이전에 최종 납품업체에 동일 또는 다른 구성품(또는 부품)을 납품했음을 증명하는 발주서·계약서·거래영수증 등)

Q8

Q7)의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산업용 기자재의 구성품(또는 부품)을 다수 업체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납품 예정업체는 정해져있으나 업체별로 납품계약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Q7)의 답변②의 서류는 어떻게 첨부해야 할까요?

A) 이 경우에는 ① 최종 납품업체 리스트 ② 리스트 내 납품업체 중 일부 업체와의 거래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Q7)의 답변②를 참고)를 첨부·제출하여 면제신청하고, 추후 이행신고를 통해 최종 납품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에 기재한 리스트에 없는 업체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에 대해 면제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Q9

무선기기도 면제대상인가요?

A) 산업용 기자재가 전파를 강하게 발사하는 이동통신 기기(휴대폰, 기지국, 중계기 등), 간이무선국, 전자파 인체보호 대상 기자재 등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인증 기자재이거나 적합인증 기자재를 포함하고 있으면, 해당 무선기기에 대해서 별도의 적합성평가가 필요합니다.

산업용 기자재에 전파가 비교적 약하게 발사되는 적합등록 무선기기 또는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 적합등록이 가능한 무선기기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무선기기에 대해서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Q10

**산업용 기자재에 와이파이 무선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가능한 주파수와 관계없이 면제가 가능한가요?**

A) 무선기기는 우리나라 주파수 분배, 할당,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 운용자가 불법 무선국 운용자가 되어 전파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용 기자재에 적합등록 또는 적합등록이 가능한 무선기기가 포함되어 있다면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완료한 무선 부품(또는 무선기능의 완성품)을 탑재하거나 장착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Q11

제조 공장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나 컴퓨터 등도 산업용 기자재로 면제되나요?

A) 산업용 기자재는 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공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무실이나 연구실 등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기자재 예시

- 생산·설비라인 등에 장착 및 사용되는 정보기기(컴퓨터류, PLC 등)
- 공장 내 공기순환이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목적으로 설치되는 대형 FAN(에어컨류)
- 생산·설비라인의 운행을 제어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자식 스위치

Q12

유통기록관리를 위해 기록해야 하는 면제승인번호란 무엇인가요?

A) 면제승인번호란 ① 면제확인번호(국내에서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
② 요건승인번호(수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면제확인번호 및 요건승인번호는 면제승인 완료시에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Q13

접근 통제 및 입출입 제한이 가능한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기자재는 산업용 기자재로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기자재는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는
적합성평가를 받고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여야 합니다.

적합성평가 제도 소식을 정책메일로 받아보세요 !

※ 신청방법 : 연구원 누리집 → 적합성평가 민원 → 정책메일 서비스 신청

KC전파인증 업무별 연락처	
▷ 적합성평가 제도	☎ 061-338-4711~4715
▷ 적합인증 · 등록 · 변경 · 면제	☎ 031-644-7530~7538,7540
▷ 적합성평가 기자재 사후관리	☎ 031-644-7471~7474
▷ 미인증 기자재 조사 · 단속	☎ 080-700-0074

국립전파연구원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